

특 허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3. 9.

특 허 청
(특 허 제 도 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서 서식을 정비하고,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자금출처에 따른 사사(acknowledgement)의 표기가 가능하도록 명세서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 등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 등 우선심사의 대상을 정비함에 따라 우선심사신청서 등의 서식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특허출원서·명세서 등의 서식 정비(안 별지 서식 제14호, 제15호, 제57호)

특허출원서 서식 및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서식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 중에서 기여율 항목을 삭제하는 등 세부항목을 정비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기재할 때의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명세서 서식에서 【기술분야】란에 사사(acknowledgement)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기관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 등 우선심사의 대상 정비

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서 등의 서식 변경(안 별지서식 제9호, 제22호)
우선심사신청서 서식 및 보정서 서식에서 전문기관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 우선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함

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안 별지서식 제13호)

디자인보호법 제36조제2항이 삭제되는 내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류제출서 서식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과 관
련된 규정을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27.~1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8호가목(4)[예] 중 “ **【보정대상항목】** 기타사항”, “ **【보정방법】** 정정”, “ **【보정내용】**”, “ **【선행기술조사의뢰정보】**”, “ **【의뢰기관】** ○○○○○” 및 “ **【의뢰일자】** 2008. 10. 1.”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 표의 공지예외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관련 규정란 중 “ **「디자인보호법」 제36조제2항**”을 “ **「디자인보호법」 제36조**”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0호가목 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	---	--------------------------------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0호사목(1) 중 “ **【기여율】** ,”을 삭제하고, 같은 목 (2) 중 “**시스템(NTIS)**”를 “**서비스(NTIS)**”로, “ **【과제관리(전문)기관명】** 란은”을 “ **【부처명】** 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과제관리(전문)기관명】** 란은”으로 하며, “ **【기여율】** 란은 이 발명을 지원한 과제가 1개인 경우에

는 1/1로 적고,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별 기여율을 ○/□과 같이
분수로 적되, 총합이 1이 되도록 적습니다.”를 삭제하고, 같은 목 (2)[예]
외의 부분에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예] 중 “【기여율】 1/2”을 각각 삭제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
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서 출원서에 국가연구
개발사업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또한, 이
발명을 지원한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전인 경우에는 【과제
고유번호】란에 “미부여”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출원서 등의 보정을 통해 반드시 과제고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술분야】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으려는 발명(고안)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
하게 적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사사(acknowledgement)를 적을 수 있습니다.

[예]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 . . 하기 위한 . . . 에 관한

※ 사사(acknowledgement) 기재 시 유의사항

사사는 【기술분야】란에 적는 것을 권장하며, 다음 예 1, 2, 3과 같이 자금 출처(funding
source)를 구분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사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작성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책임 하에 정확한 내용
을 적어야 합니다.

[예 1]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전부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기술분야】

【0002】 본 발명(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처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과제번호 ○○○○).

[예 2] 정부 및 타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각각 연구개발비를 일부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기술분야】

【0002】 본 발명(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처명)의 지원을 일부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과제번호 ○○○○).

【0003】 또한, 본 발명(고안)은 ○○전자 ○○센터(기관/기업명)의 지원을 추가로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과제번호 ○○○○).

[예 3] 정부 외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과제가 아닌 경우)

【기술분야】

【0002】 본 발명(고안)은 ○○전자 ○○센터(기관/기업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과제번호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의 기타사항란 중 “□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의뢰일자】)” 및 “(【국제특허분류】)”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 표의 우선심사신청의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령」 제12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 참고의 라목 중 “특허청구범위(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청구범위”로 하고, 같은 쪽의 기재요령 제5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쪽의 기재요령 제6호가목 중 “특허청구범위”를 “청구범위”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0호가목 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	--	-------------------------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0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 【과제관리(전문)기관명】 , 【연구사업명】 , 【연구과제명】 , 【과제수행기관명】 및 【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 (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과제고유번호】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 【과제번호】란은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과제별로 부여하는 세부과제번호를 적습니다. 【부처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과제관리(전문)기관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부과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과제수행기관명】란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기간】란은 해당 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적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성 jako 출원서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또한, 이 발명을 지원한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전인 경우에는 【과제고유번호】란에 “미부여”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출원서 등의 보정을 통해 반드시 과제고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농촌진흥청

【과제관리(전문)기관명】 농촌진흥청

【연구사업명】 바이오장기생산기술개발

【연구과제명】 형질전환 복제무균돼지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기술개발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18. 4. 1. ~ 2019. 3. 31.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관리(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명】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명】 당단백질과 당지질말단당쇄변화에 기초한 간암 바이오마커의 발굴을 통한 임상적용연구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18. 2. 1. ~ 2019. 1. 31.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해당사항 없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특허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8153